

제477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15:00 ~ 15:40 (회의소집 통보일 : 2024년 7월 9일)
2. 장소 : 본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6명	박언표, 김상권, 서의택, 안진환, 정주철, 하선규	
	감사 1명	황성철	
불참 임원	이사 2명	강신혁, 윤성복	
	감사 1명	정 일	

박언표
안진환
정주철
서의택
하선규
김상권
황성철

4. 안건

가.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기타사항

5. 회의내용

의장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재적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제477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접수하다.

가.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은 제시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글로컬대학 사업의 진행 경과와 정관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 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으며 향후 글로컬대학 본지정에서 탈락될 경우 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중 글로컬대학 관련 조항은 무효로 함을 선언한 후 정관 변경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직제</p> <p>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두며, 동법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u>②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임용 할 수 있다.</u>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하며,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p> <p>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좌 동) ②(삭 제) ③(좌 동)</p> <p>제93조의3 (연합대학) ①교육부의 글로벌 대학 사업은 신라대학교와 동명대학교가 연합하여 추진한다. ②신라대학교의 미래웰라이프스쿨과 동명대학교의 미래모빌리티스쿨 등 주어진 과제를 공동 운영하기 위하여 연합대학 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연합대학위원회와 관련한 조직, 인사, 재정 등 업무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2024. 7. 18. 제477차 이사회 의결)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연합대학의 경과조치) 제93조의3 개정규정은 글로벌대학 본지점에서 탈락될 경우 관련 조항의 개정은 무효로 한다.</p>	<p>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 2733 (2023.03.23.) 「학교법인 박영학원 정관변경 보고회신」 시정요청사항(임면사항 삭제) 반영</p> <p>글로벌대학관련 조항 신설</p> <p>부칙 신설</p>

백어필
한진희
김상근
황영환

나. 기타사항

의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참석 이사 상호 간에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6. 폐회선언

안건 처리가 다 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 박영학원 이사장	박언표 (서명)	박언표
이 사	김상권 (서명)	김상권
이 사	서의택 (서명)	서의택
이 사	안진환 (서명)	안진환
이 사	정주철 (서명)	정주철
이 사	하선규 (서명)	하선규
감 사	황성철 (서명)	황성철